괴정제일교회 정관 개정안

2026년 5월 3일 공동의회 개정안

붉은색 부분만 개정됨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독립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괴정제일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에 명시된 교리와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소재지)

본 교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449번길 17(괴정4동)로 한다.

제4조(대표자) 신설

1. 본 교회의 대표자는 윤석철 목사로 한다.
2. 대표자 성명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단독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 2 장 교 인

제5조(의미)

교인이란 본 교회에 등록 된 모든 사람을 말하며, 신급을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제6조(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공적예배(주일예배,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훈련 과정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헌금、전도、봉사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2.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거룩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 등의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교회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법도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7조(교인의 권리)

1. 본 교회 교인은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육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 공동의회 회원권, 청구권, 결의권,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교인의 자격 정지 및 상실 : 병환, 여행, 학업, 병역, 직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교인권이 상실된다.
3. 위 2항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장거리 이사, 타교회 등록, 자진 제명(제적) 요청, 또는 자진하여 본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당회가 심사한 후에 교인의 명부에서 제적(제명)할 수 있다.
4. 교인권을 상실한 자가 복귀하여 교회를 계속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회복한다.

제 3 장 직 원

제8조(목사)

1. 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로 한다.
2. 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3.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본교회를 사임 후 2년 이내에는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4.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5. 목사의 직무, 휴무, 부교역자 청빙, 기타 관련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장로)

1. 장로의 자격, 직무, 선택과 임직 그리고 사임, 사직 및 복직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2. 다른 교회로부터 전입한 60세 이하의 장로는 등록한 후 1년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3. 장로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4. 장로, 장립집사, 권사의 후보 자격은 교인의 의무와 주일성수(예배생활), 교회봉사, 구역모임 참석, 헌금생활(십일조)을 성실히 하는 성도이어야 한다.

제10조(집사와 권사)

1. 집사와 권사의 자격, 직무, 선택과 임직 그리고 사임, 사직 및 복직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2.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전입한 65세 이하의 집사와 권사는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로 임명된 후 1년 이상 지나면 당회가 시무를 위한 투표에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된 사람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가 허락된다.
4. 집사와 권사의 임기는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제11조(직원 및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1. 관리직원과 사무직원은 당회에서 매년 심사 후 임명하되, 정년은 관리직원 70세 그리고 사무직원 65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2.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는 매 3년마다 당회에서 심사 후 임명한다.

제 4 장 회의와 조직

제12조(공동의회)

1. 공동의회의 회원은 교회등록 후 1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단,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한 성도는 회원의 자격이 없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 교회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가.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가. 회장은 당회장(담임)이 겸한다.
   나.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 재산(사택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나. 금융권 대출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인준
라.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마. 당회가 제시한 안건
바. 직원의 선거 사항
사. 교단 소속의 탈퇴 및 가입, 변경 사항
아. 안건의 수정 사항

5.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6. 공동의회의 성수는 참석수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당 해년 1월에 예결산 공동의회와 당 해년 7월에 재정 보고 공동의회로 하여 각각 소집, 결의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집 월은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당회)

1. 당회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와 협동장로로 구성한다. 협동장로는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2.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당회는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단,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1인 장로1인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4. 당회에 시무장로가 1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고 하며, 일반 당회 직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6.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장로, 집사, 권사 투표일 공지
   나. 부교역자 및 유급 봉사자의 임명
   다. 제직회 각 부서를 비롯하여 교회 주요 기관의 부장 및 차장에 대한 인사
   라. 교회의 예산과 정책의 수립
   마.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바. 제반예배 주관
   사. 학습, 입교 및 세례의 문답과 시행을 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하는 일
   아. 성찬예식의 주관
   자.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차. 교회직원의 임면
   카. 각종 헌금의 실시와 지도
   타.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파. 교회 기본재산 관리
   차.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하. 공동의회와 제직회 소집권
7. 교인의 당회 방청 요구 시 당회는 허락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비공개회의가 필요할 경우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
8. **당회와 치리회의 권한, 직무, 운영, 기타 관련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제직회)

1.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제직회의 구성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계출납1인, 회계기장1인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회의진행은 당회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3. 각 부서장은 당회가 임명한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4.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회는 1년에 4회 이상 소집한다.
   나. 임시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회나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다.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5. 제직회의 성수는 출석수로 한다. 단 지나치게 적은 수가 모였을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으로 연기할 수 있다.
6.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산의 집행과특별위원회 심의
   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다. 기타 공동의회나 당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의결 및 실행
   라.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7. 제직회 결의는 정관에 제시된 제직회 관련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 없는 제직회 관련 안건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원칙)

교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기능적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재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2. 교회의 재정은 분기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

1.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당회의 결의로 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한다. 단 매매하거나 취득, 증여, 교환, 담보설정 등의 경우에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교회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제17조(예산과 결산)

1. 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는 당 해년 1월 1일부터 당 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예산의 확정을 위하여 당회는 매년 연말에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년도에 상설하여 운용한다.
3.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 초안을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한다.

제18조(헌 금)

1. 교인의 개별 헌금 내역은 재정부장과 회계 담당자만이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개별 헌금 내역의 기밀은 준수되어야 한다. 단, 교차 확인을 위해서 재정부는 매주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담임목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출납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19조(감사위원회)

교회의 회계 감사 및 행정에 관한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회에서 장로 1인, 장립집사 3인 그리고 은퇴항존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감사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회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감사와 행정감사
   나. 예결산위원회가 심의한 정책의 집행 사항에 대한 평가
4.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필요시 당회 또는 공동의회 의결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 7 장 장로의 시무규례

제20조(장로의 권고 휴무)

교회가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시무에 대해 권고 휴무를 원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둔다.

1. 다음과 같이 장로에 대한 권고 휴무 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장이 청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해야한다.
   가.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다.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의사정족수는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로 하며, 발의한 안건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장로의 휴무 기간은 공동의회 결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휴무 기간에는 시무장로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휴무장로로 칭한다.
5. 권고 휴무 효력은 공동의회 결의 즉시 시행된다.

제21조(장로의 복직)

장로의 시무가 청원에 의해 권고 휴무한 자가 시무직에 복직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둔다.

1. 권고 휴무 기간이 지난 후 당회에 복직청원서(회개 반성문 포함)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권고 휴무 사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에,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한다.
3. 장로의 시무직 복직이 거부되었을 때 거부된 날로부터 1년 이후 복직청원서(회개 반성문 포함)를 당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 이후 절차는 제20조 2항과 동일하다.
4. 장로의 시무직 복직은 공동의회 복직 결의 즉시 시행된다.

제 8 장 교단 소속 탈퇴

제22조(소속 교단 및 노회의 탈퇴)

교회가 소속 교단 및 노회의 탈퇴를 원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둔다.

1. 소속 교단 및 노회의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청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하고, 일시, 장소, 안건을 한주일 전 교회에 공지해야 한다.
   가.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다.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의사정족수는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로 하며, 발의한 안건은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의결에 대한 표결방법은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4. 효력은 공동의회 의결 즉시 발생한다.
5. 소속 교단 및 노회의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와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해 소속 교단 및 노회가 간섭할 수 없다.
6. 본 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 보존한 교회 재산은 탈퇴 즉시 본 교회로 귀속된다.

제23조(교단 가입 및 변경)

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둔다.

1. 소속 교단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주일 전 교회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가.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다.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의사정족수는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로 하며, 발의한 안건은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의결에 대한 표결방법은 공동의회 출석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4. 효력은 공동의회 의결 즉시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개정)

1. 정관의 개정발의는 당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 또는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장이 청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고, 개정 발의해야 한다.
2.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한다.

제3조(보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판례 등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각 조항 중에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이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26년 5월 3일 개정안